

제 8회 목포시의회 제 1차 회의록

1. 일 시: 단기4285(1952)년 10월 23일 오전 10시 30분

2. 장 소: 의회 의사당

3. 개의성립:

1) 출석의원: 전원

劉正斗, 李小圭, 李福柱, 明南喆, 金三星, 金南鎭, 李在洪, 陳福春,
林一男, 金京炫, 文宅鎬, 金八用, 李文吉, 鄭應杓, 金慶禧, 朴贊圭,
金吉煥, 金采庸, 金子洪, 吳世一, 金永完

2) 출석한 자치단체의 직원

徐良鳳 부시장, 吳在鵬 건설과장, 金宗云 재무과장,
金容俊 호적병무과장, 金滢善 산업과장, 尹柱炫 사회과장

4. 개 회 식:

- 1) 개 회 사
- 2) 국민의례
- 3) 의장인사
- 4) 폐 회 사

5. 회의안건:

1) 의결사건

- (1) 목포시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의 건
- (2) 목포시 동세조례 개정의 건
- (3) 목포시 오물처리 문제의 건
- (4) 목포시의회의원 비용변상 조례 개정의 건
- (5) 목포시장 선거의 건

※ 제 1일: 10월 23일(목요일)

6. 개폐회식: 오전 10시 30분 개의, 오후 7시 20분 폐회

7. 의사일정:

- 1) 목포시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의 건
- 2) 목포시 동세조례 개정의 건
- 3) 목포시 오물처리 문제의 건
- 4) 목포시의회의원 비용변상 조례 개정의 건
- 5) 목포시장 선거에 관한 건

8. 개의성립:

1) 참석의원: 18명

劉正斗, 李小圭, 李福柱, 明南喆, 金三星, 金南鎭, 李在洪, 陳福春, 林一男, 金京炫, 金八用, 李文吉, 鄭應杓, 金吉煥, 朴贊圭, 金子洪, 吳世一, 金永完

2) 불참의원: 3명

文宅鎬, 金慶禧(오후 참석), 金采庸

9. 보고사항:

1) 제 7회 임시회의 회의록 통과

◇ 李在洪의원

- 전 목포시장 朴在祐는 젊은 청년으로서 전도가 유망하고 탁월한 수완가이므로 우리 21명의 의원은 도지사에게 좋은 직제에 취임하도록 건의서를 제출하자 긴급동의

◇ 李福柱의원

- 전 朴在祐 시장의 용퇴문제에 있어서는 행정적 모순을 지적하고 목포시 행정을 잘 해나가자는데 있어 용퇴케 했던 것이나 朴在祐 시장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21명의 시의원들은 다같이 단결하여 도지사에게 건의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바이다.

◇ 劉正斗 의장

- 李在洪, 李福柱 양의원의 말씀대로 도지사에게 건의서를 제출하는데 가부를 묻겠음(가 17표, 기권 1표, 가결)

10. 토의안건:

- ※ 목포시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의 건

- ※ 총무과장으로부터 조례개정에 대한 내용설명(설명요지 생략)

◇ 劉正斗 의장

- 지금부터 질의응답이나 대체토론을 해주기 바람(토론 내용 생략)

◇ 劉正斗 의장

- 본 조례안을 제 2독회에 회부할 것인가 가부를 묻겠음(가 16표, 기권 2표, 가결)

- ※ 제 2독회 축조안 심의개시

◇ 李在洪의원

- 시행일자가 7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소급하여 실시하였는가?

◇ 시정계 박상규

- 여행이 아니라 적용한다가 옳은 것인데 인쇄의 착오이다.

◇ 劉正斗 의장

- 적용일자에 있어서는 7월 15일을 오늘인 10월 23일로 수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가부를 묻겠음(가 18표, 전원 가결)

◇ 劉正斗 의장

- 제 3독회를 생략하고 본 조례안을 통과할 것인가에 대하여 묻겠음(가 18표, 전원가결)

※ 목포시 동세조례 개정의 건

◇ 총무과장 朴連太

- 조문안 낭독

◇ 陳福春의원

- 본 조례안은 내무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 검토한 연후에 통과시킬 것을 동의(재청 가결)

※ 목포시의회의원회비 변상조례 개정의 건

◇ 劉正斗 의장

- 본 안은 제 1 독회를 생략하고 제 2독회로 들어가면 어떠한가?

◇ 李在洪의원

- 제 3독회까지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재청 가결)

※ 목포시 오물처리 문제의 건

◇ 李福柱의원

- 오물은 대개 이로면에서나 기타 촌 등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가져간 모양인데 사회부장관의 통첩에 의하여 일부 산정, 연동파출소에서 제 차량을 통행 취재하고 있으므로 인분차 왕래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경찰서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을 통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동의

◇ 鄭應杓의원

- 목포시의 발전은 항만시설의 확충 여하에 있는데 현재 항만시설이 위기적인 곤란에 빠져있다.

그러므로 먼저 하양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양장소에 있는 판자집을 전부 철거하도록 교섭위원 5명을 선정하여 경비 및 경찰서에 가서 교섭하자 동의

◇ 劉正斗 의장

- 선정 방법을 말해주기 바람

◇ 鄭應杓의원

- 의장이 지명할 것과 교섭위원 5명중에는 의장도 포함키로 함

◇ 劉正斗 의장

- 교섭위원은 의장과 4분과위원장 및 발언한 鄭應杓의원을 포함해서 6명으로 하면 어떠한가?(전원일치 가결)

◇ 金永完의원

- 목포시 항만시설의 확충에 있어서 임의조치로 어업조합으로부터 세관까지 매축하면 좋겠다.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연구해서 제안하기 위하여 건설과 직원 2명과 金子洪, 鄭應杓의원 외 2, 3명만 선정하여 주면 좋겠다. 동의

◇ 金京炫의원

- 기술적 검토는 내무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동의에 첨가

◇ 劉正斗 의장

- 金永完의원의 동의에 대하여 가부를 묻겠음(가 17표, 기권 1, 가결)

※ 시장선거의 건

◇ 陳福春의원

- 시장 선거는 1일 연기하여 명일로 할 것을 동의

◇ 劉正斗 의장

- 시장 선거에 있어서는 법정기일을 도외시 할 수 없으나 중식시간 중에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 劉正斗 의장

- 휴회선언

(오후 2시 35분)

◇ 劉正斗 의장

- 시장선거는 자치법에 의거하여 단기 무기명 투표로 하는데 감표위원 2명으 선정할 것이며, 선정 방법에는 의장이 지명 할 것을 동의

◇ 李福柱의원

- 전 시장의 전철을 밟지 않고 올바른 시장을 선출하자면 신중 숙고할 문제 이고 또 출장의원을 기다리기 위하여서도 30분동안만 연장할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 陳福春의원

- 많은 방청객들이 참석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다는 것은 안될 말이다. 오늘 전 의원은 참석하여 밤을 세우더라도 이 자리에서 시장 선거 할 것을 긴급 동의(재청)

◇ 李福柱의원

- 모든 역사는 밤에 창조된다.

우리 21명 전 의원의 합의하에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朴在祐 시장같이 시민의 이목이 비등되고 또 다시 이러한 현실을 빚어낼 염려가 있다.

그러므로 출장한 두 의원을 기다리기 위해서 시간을 30분간 휴회할 것을 재차 동의

◇ 鄭應杓의원

- 3분지 2의 성원이 됴에도 불구하고 2, 3명 의원이 없다 해서 연기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빨리 진행하자.

◇ 李小圭의원

- 의원 16명으로 성원이 되어 시장을 선출할 수 있지만 여기서 시장을 선거 한다면 불과 7대 8이나 9대 7, 8대 9밖에 되지 않을 것이니 당선된 자신이나 투표한 우리 자신도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다.

오늘 저녁부터 연구하여 법적 기간은 15일내에야 하지만 합법적인 시장을 선출키 위하여 명일로 하루 연기할 것을 긴급동의

◇ 劉正斗 의장

- 하루 연기하여 내일로 선가하자는 것을 결정하는데 재석의원 3분지 2 이상으로써 가부를 정할 것인가 과반수로서 할 것인가 가부를 묻겠음

◇ 金三星의원

- 재석의원 3분지 2 이상으로 표결할 것을 동의, 재청
(가 7표, 부3표, 기권 6표으로 부결)

◇ 劉正斗 의장

- 그럼 과반수로서 법정기간을 연장할 것을 가부를 묻겠음
(재석의원 16명 중 가 8표, 부 2표, 기권 6표)

◇ 劉正斗 의장

-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할 수 있으므로 시장 선거는 내일로 할 것을 결정

◇ 劉正斗 의장

- 산회선언 (오후 7시 20분)

◇ 劉正斗 의장

- 회의록 서명에 李小圭, 陳福春의원을 지명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에 서명 날인함

단기 4285(1952)년 10월 23일

議長: 劉 正 斗

議員: 李 小 圭

”: 陳 福 春

作成者 書記: 千 世 鳳

제 8회 목포시의회 제 1차 회의 속기록

◇ 劉正斗 의장

- 지금부터 제 8회 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 朴連太 간사

- 회의록 낭독함

◇ 劉正斗 의장

- 회의록 낭독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하겠습니다.(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李在洪 의원

- 朴在祐 시장 문제를 가지고 한달여에 걸쳐 왈가왈부 상당한 의회 복잡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한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목포시민을 위한 토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朴在祐씨는 행정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현실과 같은 이러한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일신상 사표를 제출하고 스스로 물러갔으나 아직도 젊은 청춘이며 전도가 유망한 탁월한 수완가이니 우리 목포시 의원 21명은 도지사에게 건의서를 제출하여 앞으로 좋은 직위에 취임하도록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제의하는 바입니다.(동의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 있음)

◇ 李福柱 의원

- 朴在祐 시장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21명 시의원들은 다 같이 단결하여 도지사에게 건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번 朴在祐 시장이 용퇴하는데 대하여 목포시민과 목포시를 위한 행정에 모순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그 분으로 하여금 목포시 시민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은 지방자치에 맞지 않다고 하여 사회적으로나 내면적으로 투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투쟁이 눈물도 없고 동정도 없는 투쟁이었던 것은 자타가 공인하였으며, 또한 우리는 앞으로 4년 동안에 목포시민이 죽느냐 사느냐를 생각

하고 지방자치제의 근본 정신을 망각하고 돈이나 권력을 남용하여 시장을 지적한 것은 모순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번에 사퇴한 朴在祐시장보다 훌륭한 행정가를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朴在祐 시장의 청춘을 탁월한 수완으로 지내도록 하기 위하여 도지사에게 하루속히 건의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 劉正斗 의장

- 방금 李在洪의원과 李福柱의원이 말씀한대로 도지사에게 건의서를 제출하자는데 대하여 가부를 묻겠습니다.

가라고 생각하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재석의원 18명 중 17명 가로써 도지사에게 건의서를 전달할 것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시행정 수수료 조례 통과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의하여 주십시오.

◇ 총무과장 朴連太

- 도로부터 온 통첩을 낭독하였음

◇ 金永完의원

- 시민 여론으로써 행정에 임하려 한 우리들이 그렇다면 원안을 보면 의사당에 상정코자 기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에게 가로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하니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즉 말한다면 예산이 어찌 되었기에 부족한 것인가? 상부의 지시이므로 부득이 인상한다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가령 도에서는 2천圓이건 3천圓이건 인상하라고 하여도 우리 목포시가 인상할 수 없다면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李在洪의원

- 지금 간사가 낭독한 예산면에는 하등의 관련이 없습니다.

감하나 따먹고 도둑놈 말 듣더라도, 울리지 않고 과거 그대로 시행하였으면 좋겠고 시의 1년간의 수지 예산을 구체적으로 서신으로써 보고하여 주십시오.

시오.

◇ 鄭應杓의원

- 한 사람이 증명하러 가는데 시에서 찾는 시간이 많지, 쓰는 시간이나 도장 찍는 시간은 얼마되지 않으므로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것은 시에서 장사하는 식이니 수수료를 현 수수료의 반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劉正斗 의장

- 제 2독회로 들어가서 질의 응답할 것에 대한 가부를 묻겠습니다.
가라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재석의원 18명 중 16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 李在洪의원

- 도에서 오는 통첩을 보면 7월 15일자로 소급 실시하게 되었는데, 그럼 오늘부터 실시할 것인가? 불연이면 7월 15일부터 소급하여 실시할 것인가? 어찌할 것입니까?
상세히 말씀하여 주십시오.(재청하는 이 있음)

◇ 劉正斗 의장

- 그럼 7월 15일부터 소급을 실시할 것인가, 오늘부터 실시할 것인가에 대하여 가부를 묻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자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재석의원 18명 전원으로서 오늘부터 실시할 것을 통과하였습니다.

◇ 陳福春의원

- 동정세 고지서는 호별세 고지서와 동일하게 취급할 것입니까?

◇ 劉正斗 의장

- 동정세는 도에서 읍내를 목표로 한 것이므로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으니 이를 내무분과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할 것을 가부로 묻겠습니다.
가라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재석의원 18명 중 17명의 가로써 가결되었습니다.

◇ 李福柱의원

- 이번 오물관계는 문교위원회로부터 제출 작성하였는데 경쟁입찰에 대하여는 목포시를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산정, 용당 앞 선창 등 작년도의 실적으로 볼 때 아무런 성과가 없으므로 이를 동에다가 맡겨서 동 자치로 하게 하고 목포시 위생 사무소를 없애고 거기에 배치된 직원의 급료를 가지로 목포시내에 산적된 오물을 청소하도록 할 것을 제의하는 동시에 문교사회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십시오.

◇ 鄭應杓의원

- 물론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제정한 내용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동에다가 맡기고 시에서는 간섭하지 말자는 것인데 목포시내 2개 동에다가 설치하여 이미 실시 중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결과가 좋지 못하므로 이 문제를 동에다가 맡긴다는 것은 다시한번 검토하여 주십시오.

◇ 李小圭의원

- 오물처리는 주로 이로면이나 촌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는 모양인데 위생사무소나 시에서 처리할 것을 일반이 처리하여도 돈을 받는다는 것은 다소 모순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바이며, 일부 산정동이나 용당동 같은 데에서는 취재를 하는 모양으로써 당무자에게 물어본 바 사회부장관의 통첩에 의하여 오전 8시전으로 인분차 등은 왕래하도록 되었다는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취재를 하는 모양입니다

이러한 것은 서울이나 부산 등지의 외국사람들이 많이 왕래한 곳에 해당된 문제이며, 우리 목포 같은 데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경찰서장에게 구두 또는 서신을 통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동의하는 바입니다.

◇ 陳福春의원

- 의장! 이것은 내무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분과위원회에 상세히 검토를 바랍니다.

◇ 劉正斗 의장

-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가라는 분은 거수를 하여 주십시오.
재석의원 18명 중 전원 가결입니다.

◇ 鄭應杓의원

-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의원들은 무엇보다도 목포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항만시설이 위기적인 큰 곤란에 빠져 있는 오늘날의 목포시 실정을 본다면 심지어는 삼학도를 건너가는데 물이 들면 못 건너갈 현실이고 또한 삼학도 선창가에는 유력가나 권력가들이 집을 기어 그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매일같이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수심이 얕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전번에 이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C.A.C 고문이 목포에 와서 말하기를 목포의 항구는 판자집의 선창이라고 말하였으며, 목포시의 C.A.C 원조 물자는 어느 때나 판자집을 철거하여야 보내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빨리 교섭위원을 선출하여 해군 목포경비부나 목포경찰서에 교섭하여 선창의 하양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하여 주기를 본 회의에 회부하는 바이며, 교섭위원은 5명으로 하여 주십시오.

◇ 劉正斗 의장

- 그럼 교섭위원 선정의 가부를 묻겠습니다.

가라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재석의원 18명 중 전원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럼 교섭위원을 결정하겠는데 교섭위원은 각 분과위원장하고, 의장하고, 鄭應杓의원 이렇게 6명으로 정하겠습니다.

◇ 金永完의원

- 긴급동의입니다.

항만 시설 관계의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전반에 농림부장관이 목포에 왔을 때 목포시는 좋은 지리를 가지고 있는데, 부두에는 4천명이라는 노동자들이 일감이 없어 논다는 것을 볼 때 우리로서는 항만 시설을 빨리 건설해 주고 C.A.C 물자의 논의가 없었다는 것은 유감천만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해결책의 하나로서는 현재 어업조합이 있는데서 외자청 있는데 까지 50m

거리를 두들겨 막아놓으면 460평이라는 평수가 나오는데 7m에 달하는 수심으로서 굵은 선박이 출입할 수 있으니 이러한 백년대계의 공사를 시작하여 노동자의 생활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비는 3억 5, 6천만圓이 든다고 합니다.

만일 이러한 안을 구체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鄭應杓, 金子洪의원 외 2, 3명만 선출하여 주시면 기술적으로 연구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 金永完의원

- 기술적 문제에 대하여는 내무분과위원회에 회부합시다.
동의에 참가합니다.

◇ 劉正斗 의장

- 그럼 가부를 묻겠습니다.
내무분과위원회에 회부하자는데 동의하신 분은 거수를 하여 주십시오.
재석의원 18명 중 17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 李福柱의원

- 대단히 미안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것은 말하자면 21명 시의원이 합의된 시장을 내기 위해 거듭 비밀회의를 함으로서 성원이 미달된 이것에 전 의원이 합의하기 위하여 30분간만 시간 여유를 주십시오.

◇ 鄭應杓의원

- 대단히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전 시의원 21명이 합의적으로 중대한 새로운 시장을 우리가 맞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전체 목포시민들은 선출된 시장에게 무조건 항복,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들은 비밀회합을 하여 보았지만 합의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전 의원의 합의하에 우리에게 알맞는 시장을 선거하여야 할 것을 주장하며 우리는 애국자를 선출하고자 오늘도 비밀토의를 가졌습니다.
우리의 의도에 맞는 시장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3분지 2 이상으로써 투표

를 하게 된 것이고, 하등의 어느 개인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솔직히 시장을 선거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시장을 선거하는 것은 어떠한 개인의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13만 시민을 위하고 목포시의회를 위한 대변자를 전 의원이 합의적으로 선거하자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지지한 사람도 없으며, 방법에 대하여서는 재차 합의적으로 하자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 陳福春의원

- 오늘 시장 선거를 앞두고 시민 다수의 방청객이 참석하였는데 시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12시 안으로도 선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모이신 의원들은 13만 시민의 대표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전 의원은 합석하여 오늘밤을 세우더라도 이 자리에서 시장을 선거할 것을 긴급동의합니다.

(동의요 하는 이 있음)

◇ 李福柱의원

- 새삼스럽게 강조합니다.

모든 역사는 밤에 창조됩니다.

부산에서 항공편으로 2명의 의원이 도착하기를 우리는 기다려 21명의 의원이 투표를 안하면 또 朴在祐 시장 같이 시민의 이목이 비등되는 현실을 빚어 낼 염려가 있어 이를 없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재청이요 하는 이 있음)

◇ 鄭應杓의원

- 물론 시장 선거가 오늘에 임박해 우리가 최후의 합의를 못보고 있으나 2, 3명의 의원이 없다고 하여서 3분지 2로 성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연기한다 함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죄송합니다마는 의장, 빨리 진행하여 주시오.(동의하는 이 있음)

◇ 金京炫의원

- 21명 의원이 합의보다도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오늘 저녁에 도저히 뭉쳐지

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의장! 이 자리에서 성원이 되는지 보시오.

◇ 李小圭의원

- 제 1차 시장 선거가 끝난 후 우리 의원들은 수개월에 걸쳐 오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수차 시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제 1차의 시장 선거 때에도 11대 10으로 시장이 당선되었다는 점부터 비극을 빚어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전 의원 21명이 완전히 합의하에 뭉쳐서 목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할 일꾼을 선출하자는데 오늘까지 근본 정신이 있는 것인데 불행히도 입후보자가 한 사람만 된다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2, 3명이 되고 보니 우리 전 의원이 합의해서 목포를 위하고 목포시민을 위한 일꾼을 선출하자고 거듭 토론을 해온 것인데 지금의 현실을 본다면 21명 의원 중에서 16명의 의원이 남고 5명의 의원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16명으로 성원이 되어 시장을 선출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 시장을 선출한다 하여 보았자 불과 7대 8이나, 9대 7이나, 8대 9 밖에 되지 않아서 당선된 자신도 기분이 좋지 못할 것이며, 투표한 우리도 마음이 좋지 못할 것이니 계신 분들도 오늘 저녁에 더 연구하여 법적 기간은 15일 안에 해야 하지만 합법적인 시장을 선출키 위하여 내일로 하루 연기할 것을 긴급 동의 하는 바이다.(찬성이요 하는 이 있음)

그리고 반듯이 오늘 하여야 한다는 부칙도 없고 또한 방금 사무국에서 도청으로 연락하였던 바 도청으로부터서도 별지와 같은 해결론이 도착하였으므로 오늘은 시장 선거를 보류하고 내일 24일 10시에 투표하도록 동의합니다.

(동의로 하는 이 있음)

◇ 劉正斗 의장

- 21명, 의원이 합의하기 위하여 두 분이 부산에서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중 두 분은 도착하였으나 21명이 완전히 합의를 보지 못하고 퇴장을 한 의원이 있으니 하루 연기하여 내일로 선거하자는 것을 결정하였는데 재석의원 3분 지 2 이상으로써 가부를 정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으로써 할 것인가? 가부를 묻겠습니다.

◇ 金三星의원

- 재석의원 3분지 2이상이 있을 때 표결하기로 동의합니다.(재청이요, 3청이요 하는 이 있음)

◇ 劉正斗 의장

- 가부를 묻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가 7명, 부 3명, 기권 6명으로써 부결되었습니다.

제 8회 목포시의회 제 2차 회의록

1. 일 시: 단기4285(1952)년 10월 24일 오전 11시 5분

2. 장 소: 의회 의사당

3. 개의성립:

1) 참석의원: 전원

劉正斗, 李小圭, 李福柱, 明南喆, 金三星, 金南鎭, 李在洪, 陳福春,
林一男, 金京炫, 文宅鎬, 金八用, 李文吉, 鄭應杓, 金慶禧, 朴贊圭,
金吉煥, 金采庸, 金子洪, 吳世一, 金永完

4. 의사일정:

1) 시장선거에 관한 건

5. 보고사항:

1) 제 8회 제 1차 회의록 통과

6. 토의안건:

1) 시장 선거에 관한 건

(1) 투표방법: 단기 무기명 투표

(2) 개표방법: 감표위원: 鄭應杓, 金吉煥의원을 지명

(3) 투표개시: 오전 11시 22분

(4) 개표상황

후보자명	第 1 次	第 2 次	第 3 次	摘 要
김수남	5	8	4	
박영산	4			
하동현	5	8	16	16票로 當選
윤무준	6	5		
안길호	1			
기 권			1	
計	21	21	21	

※ 제 2차 투표 후 다점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로 할 것인가? 제 3차 투표

도 1, 2차 투표와 여히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 해설의 구구한 의견이 있었음.

◇ 李在洪의원

- 법규를 더 연구하기 위하여 10분간 휴회하자 긴급동의

◇ 陳福春의원

- 우리의 시장을 선출하는데, 방청객들이 많이 와 계신데 어디로 나갈 것인가? 이대로 계속할 것을 개의

◇ 劉正斗 의장

- 긴급동의에는 개이가 있을 수 없으므로 李在洪의원의 긴급동의에 대하여 가부를 묻겠음(가 6표, 부9표, 기권 6표, 부결)

◇ 폐 회 식: 기재 생략

◇ 劉正斗 의장

- 회의록 서명의원에 金子洪, 吳世一의원을 지명

◇ 劉正斗 의장

- 폐회선언

(오전 12시 50분)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에 서명 날인함

단기 4285(1952)년 10월 24일

議長: 劉 正 斗

議員: 金 子 洪

”: 吳 世 一

作成者 書記: 千 世 鳳